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099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민병덕·김현정·강준현

이용우 · 천준호 · 염태영

김영환 · 김남근 · 강득구

박희승ㆍ이정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

한 각종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및 신용기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신설 및 제68조제1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①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금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 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 용보증기금 출연금
 - 다.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 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제1항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증을 받은 대출의 대출금리에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출금리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되는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개 정 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 ①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의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따른 보험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가. 「기술보증기금법」 제13 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불연금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
	가. 「기술보증기금법」 제13 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금 다. 「신용보증기금법」 제6 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u>출연금</u>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8조(벌칙) ① 은행의 임원, 지 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 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 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 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 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생략) <신 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 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 단중앙회 출연금

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 용보증기금 출연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제1항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 른 보증을 받은 대출의 대출금 리에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 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 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벌칙) ①
1 /처체되 가야)

- 1. (연앵과 숱음)
- 2.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대출금리에 반영
	하여서는 아니 되는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경우
2. ~ 8.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